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5 . . . (제 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연월일	2025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 제작기술의 발달로 인한 자동차 내구성·성능 향상 등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여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차량교체시 구매 비용을 경감하고 소비자의 차량선택 폭 확대 등 편의 증대를 위하여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차령과 차량충당연한을 완화하되 자동차의 운행가능거리를 규정하여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입법예고(00.00.00), 규제심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중 “한다)과”를 “한다) 및 운행거리와”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요건 (제40조제1항 관련)”을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 및 운행거리와 그 연장요건 (제40조제1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차령 및 운행거리

별표 2 제1호의 승용자동차의 자동차대여사업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동 차 대 여 사 업 용	경형·소형	5년
	중형	7년
	대형	9년
	환경친화적 자동차	9년

별표 2 제1호 비고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 본문 중 “적합할”을 “적합하여야 하고,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되는 경형·소형·중형·대형 승용자동차와 환경친화적자동차는 최초 차령 연장 신청시에 운행거리가 제1호 마목에 규정한 운행거리(이하 ‘기본 운행거리’라 한다)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다음 차령 연장 신청시에 기본 운행거

리에 5만km를 더한 운행거리를 초과하지 않아야 할”로 한다.

마. 자동차대여사업용 자동차는 기본차령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경형·소형 승용자동차는 운행거리가 25만km, 중형 승용자동차
는 운행거리가 35만km, 대형 승용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는 45만km를 초과하여 운행 할 수 없다.

별표 2의2의 승용자동차의 자동차대여사업용의 차량충당연한란 중 “1
년”을 “2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
호 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운행 중인 자동차대여사업용 승
용자동차(종전의 별표 2 제1호 표에 따른 차령이 만료되기 이전의 자
동차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0조(자동차의 차령 등) 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만 운송할 것을 조건으로 일반택시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행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과 그 연장요건은 별표 2와 같다.	제40조(자동차의 차령 등) ① --- ----- ----- ----- ----- ----- -- <u>한다) 및 운행거리와</u> ---- -----.
② 삭 제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총괄과	
연 락 처	(044) 201 - 3819, 3822